

직원인사위원회규정

제정 : 2009.12.01

개정 : 2014.11.01

개정 : 2016.03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2.10.01

제1조(목적)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사무처장과 교직원 6명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16. 03. 01., 2020. 03. 01.>

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0. 03. 01.>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16. 03. 01.>

④ 본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, 간사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사무담당자로 한다.<개정 2022. 10. 01.>

제3조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③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.

제4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직원의 인사 관계 규정,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및 그 조항의 해석, 적용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및 개선

2. 직원의 신규채용, 승진임용 및 표창에 관한 사항

3. 기타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

제5조(회의록 작성) ① 직원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·날인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6조(운영) 직원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의결

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